

#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바, 가급적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금융상품 가입 당시 아버지가 2,1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2,0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 \times 10\% = 10$ 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에 아들이 7,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7,000\text{만원} - 5,000\text{만원}$ (증여공제액) =  $2,000\text{만원}$ 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000\text{만원} \times 10\% = 200\text{만원}$ 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2,1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금융상품 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증가액인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000만원(2,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구분	1997.1.1이후	1999.1.1이후	2003.1.1이후	2008.1.1이후
합산기간	5년	10년	10년	10년
공제액	5억	5억	3억	6억